

입법 예고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1. 6.



농림축산식품부
검역정책과

1. 개정이유

현행 규정으로는 식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,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, '20.11월 타결)에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이외에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 증명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RCEP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이 필요하지 아니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 제8호)

- 1)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“수출국과 합의된 증명 방법으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”를 신설함

나.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(안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)

- 1) 제6조제3항 중 “제외할지의”를 “제외할지”로 함
- 2) 제12조제3항 중 “해당되는지의”를 “해당되는지”로 함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외할지의”를 “제외할지”로 한다.

제10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수출국과 합의된 증명방법으로써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
수입하는 경우

제12조제3항 중 “해당되는지의”를 “해당되는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)	제6조 (현행과 같음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검역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<u>제외할지</u> 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제 외할지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(검역증명서의 첨부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) (생 략)	제10조 (현행과 같음)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8.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방법으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</u>
제12조(수입 금지 식물 등)	제12조 (현행과 같음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, 금지 지역, 금지 병해충에 <u>해당되는지</u> 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해당되는지 ----- ----- -----.